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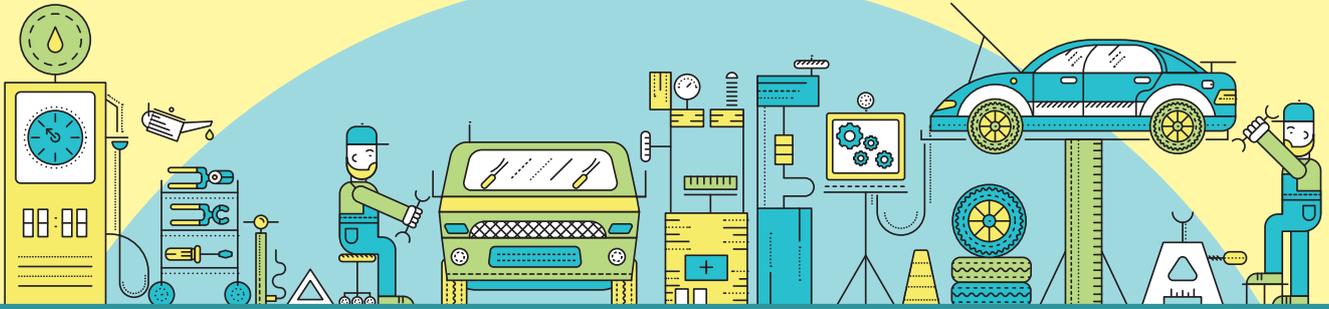
국책대학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전기자동차과

국비무료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

2025학년도 하이테크과정(단기) 모집

• 자동차정비검사 •

내연기관자동차/EV/수소자동차/배터리 리사이클 전문가 육성



모집기간

25. 7. 1.(화) ~ 입학 확정시까지

교육기간

25. 9. 1.(월)부터 3개월 간

지원자격

- 연령: 입학일 기준 만 39세 이하
- 2년제 대학이상 졸업(예정)자
- 4년제 대학의 2년 이상 수료(예정)자
- ※ 지원자격 세부사항은 모집요강 참조

주요교과

- 내연기관자동차, 친환경자동차 분야
- 전기자동차, 수소자동차, 배터리 리사이클, 엔진 분야
- 모터, 스택, 인버터, 리튬배터리, 샤프트, 전기 분야

입학특전

- 교육훈련비 전액 무료
- 훈련장려금 지원(식비+교통비 지원)
* 단위기간 출석률 80% 이상
- 최신 시설 기숙사 완비
- 취업지도 및 알선

문의처

- 입학문의 051-330-7730
- 학과문의 051-330-7789



한국폴리텍대학
부산캠퍼스



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

2025학년도 하이테크과정(단기) 모집요강

1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

과정	학과	직종	모집 정원	모집 인원	모집1차		
					소계	일반	기회균형
하이테크 (3개월)	전기자동차	자동차정비검사	20	24	24	16	8

※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은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2 전형일정

차수	원서접수	면접	합격자 발표 및 등록
모집1차	2025. 7. 1.(화) ~ 8. 22.(금) 17:00	2025. 8. 25.(월)	2025. 8. 26.(화) ~ 8. 29.(금)

- 원서비 및 전형료 무료
- 접수방법
 - 온라인: 대학 홈페이지 접수 (www.kopo.ac.kr/busan)
 - 오프라인: 대학 본부 교학처 방문
- 기타 서류 제출 방법: 방문, 등기, 팩스, 대학 대표 전자우편 발송
 - 주소: (46550)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155번길 99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교학처 하이테크과정 입시담당자 앞
 - 팩스: 051-332-4801
 - 전자우편: poly116@kopo.ac.kr
 - 원서 접수 후 3일 이내 제출

※ 최종 모집결과 결원 발생 시 별도 계획에 의거 자율모집을 실시할 수 있음

※ 전형일정 및 세부사항은 대학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3

입학 자격

구분	내용						
일반선발	<p>▪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연령/학력 및 자격증 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상기 사항에 둘 이상 해당할 경우 그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* 근로자의 경우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자에 한함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 ② 비정규 형태 근로자 (상세 자격 기준 확인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용직, 단시간 근로자, 기간제 근로자, 일시적사업 고용근로자 ③ 개인사업자 중 세부요건을 충족하는 자 (상세 자격 기준 확인) ④ 노무제공자 중 세부요건을 충족하는 자 (상세 자격 기준 확인) ⑤ 「난민법」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난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무부장관 명의 직업훈련 추천서를 받은 자에 한함 ⑥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결혼이민자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- 귀화 허가를 받은 자 ⑦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중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이내인 자 (야간, 방송대학·통신대학·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수업 연한 무관) ⑧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법인의 대표자로서 세부요건을 충족하는 자 (상세 자격 기준 확인) ⑨ 「소득세법」 제168조 또는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 등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단체의 대표로서 세부요건을 충족하는 자 (상세 자격 기준 확인) ⑩ 「고용보험법」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36 1104 1433 1552"> <tr> <td data-bbox="336 1104 560 1144">성별</td> <td data-bbox="560 1104 1433 1144">무관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336 1144 560 1184">연령</td> <td data-bbox="560 1144 1433 1184">만 15세 이상~만 39세 이하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336 1184 560 1552">학력자격 (자격증, 경력)</td> <td data-bbox="560 1184 1433 1552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2년제 대학 이상 졸업(예정)자) 2~6년제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▪ (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) 3~6년제 대학의 2학년 이상 수료 및 60학점 이상 취득자 ▪ (동등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자) 위와 동등 수준의 학위를 수여 받은 자 또는 동등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(학점은행제는 80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에 해당) ▪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▪ 동일 및 유사 계열 2년 이상 실무 종사자 <p>* 동일 및 유사 계열 판단 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준용</p> </td> </tr> </table>	성별	무관	연령	만 15세 이상~만 39세 이하	학력자격 (자격증, 경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2년제 대학 이상 졸업(예정)자) 2~6년제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▪ (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) 3~6년제 대학의 2학년 이상 수료 및 60학점 이상 취득자 ▪ (동등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자) 위와 동등 수준의 학위를 수여 받은 자 또는 동등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(학점은행제는 80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에 해당) ▪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▪ 동일 및 유사 계열 2년 이상 실무 종사자 <p>* 동일 및 유사 계열 판단 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준용</p>
성별	무관						
연령	만 15세 이상~만 39세 이하						
학력자격 (자격증, 경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2년제 대학 이상 졸업(예정)자) 2~6년제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▪ (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) 3~6년제 대학의 2학년 이상 수료 및 60학점 이상 취득자 ▪ (동등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자) 위와 동등 수준의 학위를 수여 받은 자 또는 동등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(학점은행제는 80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에 해당) ▪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▪ 동일 및 유사 계열 2년 이상 실무 종사자 <p>* 동일 및 유사 계열 판단 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준용</p>						
기회균형 선발	<p>▪ 일반선발 지원자격을 충족하는자 중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②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·가족 ④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중·장기복무 제대군인 ⑤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⑥ 「군인사법」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대상자 중 장기 복무(10년)한 전역 예정 군인 						

□ 상세 입학 자격

구분	내용
비정규 형태 근로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일용직) 하루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▪ (단시간근로자)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▪ (기간제근로자 및 일시적사업 고용 근로자) 일시적 사업 또는 계속 사업을 위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
개인사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공통)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개인 사업자 중 원서 접수 전일까지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“종합소득세” 신고 시 분배 비율에 따라 인정된 소득금액 합산(소득금액증명 확인) ▪ (부동산임대사업자) 최근 1년간 「부가가치세법」 제5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업기간 1년 미만 지원 가능 ▪ (부동산임대업 이외)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(수입금액)이 4억 미만인 사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간이과세자 또는 사업 부진에 따른 휴업신고자는 사업기간 1년 미만 지원 가능 ※ 사업자등록증이 여러 개일 경우 합산하여 4억 미만인 사람
노무제공자*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미만인 사람
법인대표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법인의 대표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
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대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「소득세법」 제168조 또는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8조 등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대표로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

*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플랫폼종사자, 프리랜서 등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

4 선발 방침

가. 성적반영 요소 및 배점

구분	계	성적반영 요소		성적 적용 비율
		필기(점수)	면접(점수)	
하이테크	100	-	100	면접 100%

나. 면접 세부사항

전형	실시내용	진행방식
면접고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NCS 영역 기반 종합면접 ▪ * 의사소통·자기개발·대인관계·직업윤리 등 ▪ 학업 및 취업의지, 지원학과에 대한 이해도 ▪ 학과 특성에 따라 수학 가능 여부 판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면접방식: 다대일 ▪ 면접위원: 2명 ▪ 소요시간: 15분 이내

※ 면접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

※ 면접 시간 및 장소는 면접일 전일 대학 홈페이지 공지

다. 선발방법 및 동점자 처리

선발방법	동점자 처리(NCS 영역별 기준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면접 점수(100점 만점)에 가산점(해당자)을 합산하여 총점의 고득점순 선발 ▪ 합격자 선발 시 합격권 안에 포함된 2명 이상의 총점이 동점인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NCS 영역별 기준(순번) 고득점순 선발 ▪ 각 전형 미달 발생 시 일반과 기회균형 교차선발 가능 ▪ 합격자 선발 이후 수험자의 입학 자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, 입학 자격 재심의를 위해 수험자에게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, 불응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의사소통능력 항목 면접점수 우수자 2. 자기개발능력 항목 면접점수 우수자 3. 대인관계능력 항목 면접점수 우수자 4. 직업윤리 항목 면접점수 우수자 5. 수리능력 항목 면접점수 우수자

라. 가산점 대상자 및 적용 비율

대상자	적용비율
난민, 결혼이민자 등,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*, 다문화가정의 자녀**, 학교 밖 청소년***, 저탄소 관련 경력자	만점의 5%

*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 등의 보호가 종료된 34세 이하 청년

**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로, 한국 국적자인 본인에 한함

*** 학교밖청소년센터를 6개월 이상 이용하고 센터 프로그램에 1회 이상 참여한 자

5

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

구분	내용
합격자발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차수별 최초합격자 발표일은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며 개별 통보하지 않음 ▪ 최초합격 및 예비합격 후보자의 예비 순번은 최초 합격자 발표일에 일괄 공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총원기간 동안 수험자는 본인의 예비 순번을 계속 열람할 수 있음 ▪ 총원합격자는 예비합격 후보자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함 ▪ 합격 후라도 지원 방법에 위반 사항이 있거나 부정 사실이 밝혀지면 입학 무효 ▪ 수험생은 반드시 합격 여부를 스스로 조회 및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및 그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
등록안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“온라인 등록원(서약서)” 제출함을 등록한 것으로 함 ▪ 2개 이상 대학에 합격한 자는 최종 1곳에만 등록함을 원칙으로 하며, 이중 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을 무효로 함 ▪ 입학확정일 이전 대학에 등록한 자가 다른 대학에 합격하여 등록을 원할 경우 “등록포기” 후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미등록 총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모집 차수별 미달 인원은 이월하여 다음 차수에 모집함

6

지원자 유의사항

유의사항	내용
접수취소 (변경) 불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원서 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접수 취소 및 변경할 수 없으며,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복수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캠퍼스 간) 복수지원 제한 없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등록 및 등록포기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. 단, 이중등록 금지 (동일 캠퍼스) 동일 과정, 동일 모집 차수 내 1개 학과 지원 원칙
면접 불참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면접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되므로, 지원 시 캠퍼스의 면접 일정 확인
선발제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폴리텍대학 2003년 이후 개설 과정 3회 이상 수강자(중도 탈락 포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종변동구분(제적, 자퇴, 조기취업, 졸업)의 최종변동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80일 이상일 경우, 해당 교육과정까지의 수강 이력은 교육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「공무원연금법」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「군인연금법」에 따른 군인으로 재직 중인 사람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 제외 대상 아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을 적용받는 사람 「군인사법 시행령」 제60조의2제4항을 적용받는 사람 「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」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·용자·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「고용보험법」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입학전형관리소위원회에서 교육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
전화번호 정확히 입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(추가연락처 포함)를 원서 접수 시 정확히 입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총원합격자 개별 통보 시 3회 연락 시도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두절된 자는 불합격 처리하고 다음 순위자로 총원함 통화 불가, 연락처 기재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 및 그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
필수(추가)서류 제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원서접수 완료 후 추가 서류 제출 해당자는 반드시 지정된 기한까지 방문, 등기, 팩스, 대학 대표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서류미제출자 및 서류미비자는 불합격 처리함 제출서류는 지원자 기준으로 발급하여야 하며,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함(예외 별도 표기) 지원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합격/입학 무효처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무효로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폴리텍대학 내 과정구분 없이 이중등록이 된 자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합격 또는 입학한 후라도 사실조회 결과 지원자격 미달인 자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자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학과별 모집정원의 50%미만 등록 시 해당학과를 개설하지 않을 수 있음 대학 사정에 의해 학과 통폐합이 있을 수 있음 모집요강 기재 내용은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모집요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학전형관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
문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학과 문의: (전기자동차) 051-330-7789 입시·등록 문의: 051-330-7730

유의사항

- 제출 서류는 6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(예외 별도 표기)
- 모든 외국어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받아 제출
- 방문, 등기, 팩스, 캠퍼스 대표 이메일 발송본 인정
- 재지원 수험자 중복 서류 면제 가능
- 지원자격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필요 시 대학 홈페이지 입시서식자료실 내 서식을 활용하여 제출

자격 구분		제출서류		비고(발급기관)								
공통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입학원서 ▪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		▶ 온라인 접수자 제출 불필요								
학 력 · 자 격 · 경 력	2년제 이상 대학의 졸업(예정)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졸업(예정)증명서 ▪ (예정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)학년이 표기된 재학(재적)증명서 		▶ 학위취득 기관 (국가평생진흥원 발급 증명서 포함) ▶ 외국소재 대학의 경우 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 필요 ① 아포스티유 확인 ② 영사 확인 ③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·학위인증센터 발행 인증보고서								
	4년제 대학의 2년 이상 수료(예정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수료(예정)증명서 ▪ 성적증명서 										
	전문대졸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동등 이상의 학력을 증빙하는 모든 종류의 서류 인정 										
	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자격증 사본 										
	동일 및 유사 계열 2년 이상 실무종사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직무가 기재된 경력증명서 										
고용보험 미가입자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제출서류 없음 		▶ 담당자 시스템 조회								
비정규형태 근로자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비정규 형태임을 증빙하는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 										
개인사업자		개인사업자 (부동산 임대업 외)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일반</td> <td>사업자등록증명원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</td> </tr> <tr> <td>간이</td> <td>사업자등록증명원</td> </tr> <tr> <td>면세</td> <td>사업자등록증명원,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</td> </tr> <tr> <td>휴업</td> <td>휴업사실증명원</td> </tr> </table>	일반	사업자등록증명원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	간이	사업자등록증명원	면세	사업자등록증명원,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	휴업	휴업사실증명원	▶ 세무서 및 홈택스
일반	사업자등록증명원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											
간이	사업자등록증명원											
면세	사업자등록증명원,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											
휴업	휴업사실증명원											
부동산 임대 사업자	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일반</td> <td>사업자등록증명원,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</td> </tr> <tr> <td>간이</td> <td>사업자등록증명원</td> </tr> <tr> <td>면세</td> <td>사업자등록증명원</td> </tr> <tr> <td>휴업</td> <td>휴업사실증명원</td> </tr> </table>	일반	사업자등록증명원,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	간이	사업자등록증명원	면세	사업자등록증명원	휴업	휴업사실증명원		
일반	사업자등록증명원,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											
간이	사업자등록증명원											
면세	사업자등록증명원											
휴업	휴업사실증명원											
노무제공자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서 		▶ 산업체								

자격 구분	제출서류	비고(발급기관)
난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법무부장관 명의의 직업훈련 추천서 	▶ 해당서류 제출 시 가산점 인정을 위한 서류 생략 가능
결혼이민자등	결혼이민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	▶ 해당서류 제출 시 가산점 인정을 위한 서류 생략 가능
	귀화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(국적취득, 상실 특정 발급) 	
졸업까지 남은 연한 2년 이내인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전문대학) 재적증명서 (3년제대학이상) 해당 대학에서 발급하는 서류 중 재적과 학년을 증빙하는 모든 종류의 증명서 인정 	▶ 해당 대학
법인 대표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	▶ 세무서 및 홈택스
고유번호 단체 대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유번호증 소득금액증명원 	▶ 세무서 및 홈택스
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승인 통지서 	▶ 근로복지공단

□ **기회균형선발 서류** - 다음 중 각 구분에 해당하는 자 필요서류 제출

자격 구분	제출서류	비고(발급기관)
수급권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(지원자 본인 기준 발급) 	▶ 시/군/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(원서접수일 이후 발급)
장애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아래 서류 중 택 1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(수첩, 복지카드) 사본 	▶ 행정복지센터
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아래 서류 중 택 1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당 학교(초,중,고) 졸업(재학,제적)증명서 사본 미진학사실확인서 	▶ 해당 학교
국가유공자 및 유족·가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아래 서류 중 택 1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독립유공자(유족 또는 가족) 확인원 국가유공자(유족 또는 가족)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(유족 또는 가족) 확인원 5·18민주유공자(유족 또는 가족) 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(유족 또는 가족) 확인원 	▶ 국가보훈부 및 보훈(지)청
중·장기복무 제대군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아래 서류 중 택 1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기 또는 장기 복무제대군인증 사본 중·장기복무 제대군인 확인서 	▶ 국가보훈부 및 보훈(지)청
한부모가족지원법 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부모가족 증명서(지원자 본인 기준 발급) 가족관계증명서(지원자 본인 기준 발급) 	▶ 시/군/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(원서접수일 이후 발급)
전직지원교육대상자 중 장기복무제대예정군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역예정증명서 전직기본교육수료증 	▶ 병무청, 국방부

□ 가산점 서류 - 다음 중 각 구분에 해당하는 자 필요서류 제출

자격 구분	제출서류		비고(발급기관)
난민	▪ 법무부장관 명의의 직업훈련 추천서		▶ 신분자격별 서류 제출 시 가산점 인정을 위한 서류 생략 가능
결혼이민자 등	결혼이민자	▪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	▶ 신분자격별 서류 제출 시 가산점 인정을 위한 서류 생략 가능
	귀화자	▪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▪ 기본증명서(국적취득, 상실 특정 발급)	
자립준비청년 (보호종료아동)	▪ 보호종료확인서		▶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
다문화가정의 자녀	▪ 가족관계증명서 ▪ 부(또는 모)가 귀화자인 경우 부(또는 모)의 기본증명서(상세)		▶ 시, 군,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
학교밖청소년	▪ 추천서		
저탄소 관련 경력자	▪ 직무가 기재된 경력증명서		▶ 하이테크과정 해당